

자산의 단계적 사용에 따른 생활유지가능성과 조정가능 소비수준 : 초과지출을 하는 1인 은퇴노인가계를 대상으로*

Sustainability of Spending and Adjustable Level of Consumption
According to a Step-by-step Use of Retirement Assets : Focused on Overspending
Households of Single Retired Elderly

충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조교수 김민정**

Dept. of Consumer Studies, Chungbuk National Univ.
Assistant Professor, Kim, Min-jeung

〈 목 차 〉

I. 서론	IV. 연구결과 및 해석
II. 이론적 배경	V. 결론 및 제언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Abstract〉

This study performed an analysis to determine if an individual can maintain the current consumption, in the case of a single retired elderly person's household using the accumulated assets. Assets are divided into three types, based on the behavioral economics life cycle hypothesis : financial assets, real assets excepting residential assets, and residential assets, and it is assumed that these assets were used on a step-by-step basis. Also, if the assets were sufficient, the maximum withdrawal amount was calculate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monetary assets were sufficient to cover the cost of living for 2.7 years, 6.4 years by using the real assets of the non-occupied housing, and 26.3 years in the case of residential property. Second, in the case of preferentially using the financial assets, 4.4% of the sample households were able to cover the cost of living. Households that were not able to cover the cost of living used the next-stage assets, real assets of the non-occupied housing. Households that were not able to cover the cost of living by financial assets

* 이 논문은 2010학년도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grant of th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in 2010).

** 주저자, 교신저자 : 김민정 (kimmj@cbnu.ac.kr)

liquidated the real assets with the exception of residential assets and used these to cover the cost of living. A total of 4.8% of the households were able to maintain the current cost of living through the second stage and 25.5% supplemented their funds by using residential assets. That is to say, 35% of the sample households were able to maintain the current level of living by using their assets.

Key Words : 생활유지가능성 (Sustainability of Spending), 조정가능소비액 (Adjustable Level of Consumption), 1인 노인가계 (Single Elderly Households), 심적계정 (Mental Account), 행동학적 생애주기가설 (Behavioral Life Cycle Hypothesis)

I. 서론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이는 평균수명의 연장과 저출산의 문제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고령사회에 대한 문제는 사회 전반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고, 고령자의 경제적 복지와 관련된 연구들 역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고령자의 재정상태를 분석함으로써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거나(양정선·성영애, 2001; 정순희·김현정, 2002; 이희숙·신상미, 2003; 김영순, 2004; 배미경, 2006; 송유진, 2007; 한수진·서지수, 2008; 성영애, 2010 등) 은퇴기간 동안 적정한 소비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산을 추정하여 그 충분성을 평가하거나 소득대체수준을 평가하여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연구들(여윤경, 2005; 여윤경 등, 2007; 최현자 등, 2009; 최현자 등, 2012)이 있다. 또한 실제 은퇴를 경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충분성을 현재지출수준 또는 은퇴이전의 소득수준과 비교하여 평가한 연구들이 있다(이지영·최현자, 2008; 백은영, 2008).

그러나 은퇴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자산이 충분한지를 파악하여 알려주기 보다는 남은 기간동안

안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것이다. 즉, 은퇴자가계의 재무목표는 자산을 축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비은퇴자가계의 재무목표와는 달리 은퇴 이전에 축적된 자산을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재무설계의 지침이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며(John, 2005), 이러한 지침에 대해 Bengen(1994) 이외의 많은 학자들이 노후자금고갈가능성과 유사한 용어들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Cooley et al., 1998, 1999; Pye, 2000, 2001, 2008; Milevsky, 2001; Guyton, 2004; Stout & Mitchell, 2006; Stout, 2008; Spitzer et al., 2007; Spitzer, 2008). 국내에서는 최근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초기인출율과 적정 투자수익율을 추정함으로써 은퇴자가계의 금융자산인출전략을 제시한 연구(김민정, 2009)와 은퇴자의 다양한 지출수준을 고려했을 때 노후자금고갈가능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본 연구(김민정, 2010), 그리고 은퇴자산의 부족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김혜정, 여윤경, 2011)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 대부분은 은퇴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총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실제 은퇴자들은 소득이 충분한 경우에는 금융자산에서 별도의 인출을 하지 않으며 부동산자산을

차분하지도 않을 것이다. 은퇴한 노인가계의 소비행태를 연구한 이희숙(1995)의 연구에 따르면 은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종류에 따라 한계소비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소비지출을 위해 사용되는 자산은 그 유형에 따라 순서가 결정된다고 하였다. 이는 행동재무학의 심적계정(mental accounting) 개념이 반영된 것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재와 미래의 자산과 소득을 출처와 용도에 따라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이에 따른 지출을 결정한다는 것이다(주소현, 2009). 따라서 은퇴자산의 고갈가능성이나 적정인출율을 추정하는 연구에서 은퇴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몇 가지로 구분하여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0~2035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중이 2010년 23.9%에서 2035년에 34.5%로 10.6%p 급증할 것이라고 한다. 특히 75세 이상의 노인 1인 가구는 2010년 48만 가구에서 2012년 60만 가구로 증가하였고 2035년에는 211만 가구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삼성경제연구소(2011)는 65세 노인 1인 가구가 전체 고령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31.4%에서 2010년에는 34.2%로 지난 10년간 2.8%p 상승하였는데, 이는 OECD국가 중 최고 수준이고 따라서 고령화 시대의 노인소득보장의 핵심 그룹으로서 정책적 관심이 절실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매년 급증하고 있는 1인 노인가계의 소득을 정부에서 모두 보장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스스로 소득보장이 불가능한 노인가계만을 선별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즉, 노인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모두 활용할 경우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고려하고 이것조차 불가능한 경우 소득보장의 핵심그룹으로 선별함으로써 정부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인 은퇴노인가계를 대상으로 남은 은퇴기간동안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이용할 경우 몇 년간 생활이 지속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여 노인소득보장에 대한 정책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현재소득과 현재소비지출을 비교하여 생활비가 부족한 은퇴자가계를 구분하고 이들이 보유한 자산을 활용할 경우 남은 은퇴기간동안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때 1인 은퇴노인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심적계정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하고자 한다. 또한 보유한 자산으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경우 자산으로부터 최대한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여 그들의 소비수준 향상이 가능한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부의 소득보장에 대한 핵심그룹을 선별하는 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그들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자산 활용 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을 인지시켜 주는 효과를 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행동학적 생애주기가설과 자산의 단계적 사용

본 연구에서 자산의 단계적 사용은 자산의 종류에 따라 현재의 소비지출을 위해 사용되는 순서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행동학적 생애주기 가설에 근거하여 설명될 수 있다. 행동학적 생애주기 가설(Behavioral Life Cycle Hypothesis)은 행동경제학의 이론을 이용하여 Shefrin과 Thaler(1988)가 제시한 것으로 소비자의 행동을 현실에 맞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자기통제(Self Control)와 심적계정(Mental Accounting), 그리고 프레이밍(Framing)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현재소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미래소비를 위해서는 자기통제가 필요하게 되고 이를 위해서는 본인의 의지와 심리적 비용이 부과

된다는 것이다(양성강, 2009; 김혜련, 최현자, 1999).

심리적 비용은 현금화하기 어려울수록 커지기 때문에 소비지출을 위해 사용하는 자원은 현재소득계정, 현재자산계정, 그리고 미래소득계정의 3가지 심적계정으로 구분될 수 있다. 3가지 심적계정에 대해 소비자는 서로 다른 프레이밍을 갖기 때문에 소비지출과 연관되는 정도가 다르고 이는 곧 한계소비성향으로 표현될 수 있다. 즉, 현재소득계정의 한계소비성향이 가장 크고, 미래소득계정의 한계소비성향이 가장 적어 소비지출을 위해 현재의 소득을 먼저 사용하게 된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C = f(I, A, F) \text{ 일 때,}$$

$$1 > \frac{\partial C}{\partial I} > \frac{\partial C}{\partial A} > \frac{\partial C}{\partial F} > 0 \text{ <식 1>}$$

C : 현재소비 I : 현재소득 A : 현재자산
F : 미래소득

그런데 은퇴자들의 경우는 현재소득과 현재자산은 존재하나 미래소득에 대해서는 정의하기 어렵다. 즉 은퇴자들은 그동안 모아두었던 자산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이자나 연금, 자녀들 또는 국가로부터 받는 이전소득 등이 현재소득이 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자산이 현재자산이 될 것이다. 그러나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은 현금화 가능성이 다르므로 서로 다른 심적계정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구분은 은퇴한 노인가계의 소비행태를 연구한 이희숙(1995)의 연구에서 언급된 바 있는데, 은퇴노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연금자산(ACC1), 예금과 적금(ACC2), 주식과 채권(ACC3), 주택자산과 주택이외의 실물자산을 포함한 부동산자산(ACC4)으로 구분하여 한계소비성향을 측정한 결과 ACC1의 한계소비성향이 가장 크고 ACC2와 ACC3는 유사하였으며 ACC4는 매우 작게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에 따라 연구자는 은퇴자의 경제적 복지는 총자산이 아닌 자산의 종류에 초점을 두어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에 근거하여 은퇴노인가계의 소득 또는 자산을 현재소득, 금융자산, 거주주택 이외의 실물자산, 거주주택자산으로 구분하였다. 거주주택이외의 실물자산과 거주주택자산을 구분한 이유는 우리나라 노인가계의 대부분이 실물자산에 치중된 자산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2011년 가계금융조사 자료에 의하면 60대 이상 가계는 총자산 중 85.8%를 실물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76.1%(총자산의 65.3%)는 거주주택자산이었고 나머지(총자산의 20.5%)는 거주주택이외의 실물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부동산자산을 하나의 자산 유형으로 구분하기에는 보유비중이 너무 치중되는 점을 우려하여 거주주택이외의 실물자산과 거주주택자산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거주주택에 대한 상속의 지가 매우 강하고 오랫동안 거주하던 주택의 처분으로 인한 노인의 심리적 부담(김영훈, 2010) 측면에서도 적절한 구분일 것이다.

2. 은퇴노인가계의 노후자금지속성

고령화 사회에서 장수위험은 은퇴 후 생활을 위해 필요한 자금보다 적은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충분한 노후자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따라서 개인의 소비수준을 고려하여 은퇴 후 얼마의 노후자금이 필요할지를 산정하고 현재와 동일한 정도의 저축 및 투자를 통해 축적할 수 있는 노후자금과 비교하여 추가 저축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제시한다. 이 때 필요한 노후자금을 산정하는 식은 아래와 같다.

$$\text{필요노후자금} = \text{예상노후생활비} \times$$

$$\frac{\left[1 - \left(1 - \frac{k}{1+k}\right)^n\right]}{\frac{k}{1+k}} \quad \text{<식 2>}$$

여기서, $k = \left[\left(\frac{1+f}{1+r}\right) - 1\right] \times 100$

f = 예상 물가상승률

r = 예상 자산수익률

n = 은퇴기간

즉, 남은 은퇴기간동안 필요한 자금(좌변)은 은퇴시점에 모두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예상하는 노후 생활비와 은퇴기간을 곱하여 산정된다(우변). 이때 노후생활비는 은퇴기간동안 동일한 구매력으로 유지되어야 하므로 생활비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은퇴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은퇴기간동안 일정 이자율로 증가된다. 따라서 동일한 구매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노후자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물가상승률과 이자율을 동시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물가상승률조정수익률(k)을 적용한다.

그러나 위의 <식 2>는 아직 은퇴를 하지 않은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실제 은퇴를 한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통해 남은 은퇴기간을 지낼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를 ‘노후자금지속성’이라고 한다. 따라서 <식 2>의 좌변은 은퇴자가 보유하고 있는 노후자금이 되고, 우변의 예상노후생활비는 은퇴자의 현재생활비로 교체될 것이며, 은퇴기간은 현재의 연령에서 남아 있는 은퇴기간이 될 것이다. 이를 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즉, 은퇴자는 은퇴기간동안 써야하는 노후자금이 이미 결정된 상태이므로 필요노후자금이 아닌 실제 보유하고 있는 노후자금이 되어야 하고, 예상생활비가 아닌 현재의 생활비로 계산되어야 하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동일한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가정하기 위해 물가상승률조정수익률(k)을 적용한다.

$$\text{보유한 노후자금} = \text{현재생활비} \times \frac{\left[1 - \left(1 - \frac{k}{1+k}\right)^n\right]}{\frac{k}{1+k}}$$

<식 3>

n = 남은 은퇴기간

그런데 은퇴자들은 자산 이외에도 연금소득이나 이전소득 등의 소득을 갖게 되며 앞서 살펴본 행동학적 생애주기가설에 의해 소비생활을 위해 소득을 우선 사용할 것이다. 따라서 은퇴자의 현재소득이 남은 은퇴기간동안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식 3>의 현재생활비는 현재소득을 사용하더라도 부족한 생활비가 될 것이다. 만약 수정된 식의 좌변과 우변이 정확하게 일치하면 보유한 노후자금은 모두 소진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좌변이 우변보다 큰 경우에는 노후자금이 충분함을 나타낸다. 따라서 은퇴자의 현재소득이 현재의 생활비보다 많거나 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생활비가 없으므로 노후자금지속성은 보장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식 3>을 수정하면 보유자산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기간(n)이나 남은 은퇴기간동안 자산으로 지출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소득이 현재지출보다 적은 가계를 대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얼마동안 충당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만약 대체기간이 충분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으로 지출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산정하여 새로운 소비수준을 제시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초과지출을 하는 1인 은퇴노인가구의 자산상태는 어떠한가?

1-1. 초과지출을 하는 1인 은퇴노인가구의 자산상태는 어떠한가?

1-2. 초과지출을 하는 1인 은퇴노인가구의 자산의 보유현황에 따른 집단은 어떻게 분류되는가?

연구문제 2. 초과지출을 하는 1인 은퇴노인가구의 보유자산유형별 자산상태는 어떠한가?

2-1. 보유자산유형별 자산상태는 어떠한가?

2-2. 보유자산의 활용에 따른 부족생활비 대체가능기간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자산의 단계적 사용에 따른 생활유지가능성과 조정가능한 소비수준은 어떠한가?

3-1. 금융자산을 사용하는 경우 생활유지가능성과 조정가능한 소비수준은 어떠한가?

3-2. 거주주택이외의 실물자산을 사용하는 경우 생활유지가능성과 조정가능한 소비수준은 어떠한가?

3-3. 거주주택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 생활유지가능성과 조정가능한 소비수준은 어떠한가?

2. 연구자료 및 분석대상

본 연구의 목적은 홀로 생활하는 은퇴자들이 현재의 소비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소득으로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심적회계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용하여 현재와 같은

소비생활을 어느 정도 더 유지할 수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은퇴자산을 사용함에 따른 생활유지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 제3차 조사(2009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대상자를 추출하였다. 즉, 혼자 생활하는 60세 이상의 고령자 중 현재 비취업상태이며 최근 1개월 동안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사실상 완전은퇴자 525명을 1차로 추출하였다.

이들 중 초과지출가계를 추출하기 위해 현재 소득 대비 현재지출 비율을 파악하고 이 비율이 9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지출가계로 정의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가계의 경제적 만족도를 기준으로 가계수지지표의 준거기준을 설정한 최현자 등(2003)의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이로써 525명의 1인 은퇴노인가계 중 소득 대비 지출 비중이 90% 미만인 89가계(17%)를 제외하고 90%를 초과하는 436명(83.0%)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아래의 <표 1>은 분석대상가계의 가계수지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표 1> 분석대상가계의 가계수지상태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중위수
1인 은퇴노인가계		5.71	13.41	1.78
준거기준(<0.9) 만족	89(17.0)	0.65	0.61	0.72
준거기준(<0.9) 불만족 - 초과지출가계	436(83.0)	6.74	14.51	2.50

3. 변수정의 및 분석방법

1) 초과지출여부의 결정을 위한 가계소득과 지출의 재구성

초과지출가계를 분류하기 위해 1인 은퇴노인가구의 현재소득 대비 현재소비지출 비중을 계산하였는데, 이때 현재소득은 국민노후보장패널의

소득항목을 연구목적에 맞게 재분류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목적이 현재의 소비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부족한 소득을 자산으로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으로, 현재의 소득이 남은 은퇴기간동안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노후보장패널의 소득 항목 중 일시적인 소득으로 볼 수 있는 주식매매차익(금융소득)이나 부동산매매차익과 권리금차익(부동산소득), 보험금, 퇴직금 받은 금액이나 상속 및 증여 받은 금액(기타소득) 등은 제외하고, 비교적 매년 반복되는 소득 항목만을 포함시켰다(<표 2> 참고). 또한 소득에서 제외한 항목들은 금융자산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표 2> 본 연구에서 재구성한 소득 포함 항목

소득 종류		재구성 항목
금융 소득	예·적금/국·공채권 이자	소득
	주식등배당금	소득
	주식매매차익	금융자산
	사적으로 빌려준 돈 이자	소득
부동산 소득	집세(월세) 소득	소득
	임대료소득	소득
	부동산매매차익소득	금융자산
	권리금차익소득	금융자산
	기타부동산소득	소득
	공적이전소득	소득
	사적이전소득	소득
	연금형태소득	소득
기타 소득	보험금	금융자산
	퇴직금	금융자산
	상속/증여	금융자산
	기타(복권당첨금등)	금융자산

2) 심적계정에 따른 자산의 분류

본 연구에서는 자산을 금융자산(R1)과 거주주택이외의 실물자산(R2), 그리고 거주주택자산(R3)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은퇴자가계의 경제적 복

지를 파악할 때 총자산의 수준보다는 자산의 종류에 더 초점을 두어야 함을 강조한 이희숙(1995)의 연구결과를 참고한 것이다. 금융자산(R1)은 금융기관의 예·적금 잔고, 개인연금 불입액, 저축성보험 불입액, 적립식펀드 납부금, 주식투자자금, 유가증권,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 등 국민노후보장패널 조사표의 금융자산과 <표 2>에서 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한 항목을 포함한 금액이다. 거주주택이외의 실물자산(R2)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과 회원권 등의 준부동산을 모두 포함하였다. 거주주택자산(R3)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자가인 경우 현재시가, 전·월세인 경우 보증금을 모두 포함하였다.

3) 보유자산유형에 따른 집단구성

다음으로는 심적계정에 따른 세 가지 유형의 자산을 보유여부를 기준으로 8가지 유형의 집단으로 구분하고 집단별 자산상태의 차이를 살펴보았으며, 각 자산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몇 년 정도 대체할 수 있는지 계산하였다. 즉,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금융자산을 사용하는 경우 몇 년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남은 은퇴기간과 비교를 통해 다음 단계의 자산 즉, 거주주택이외의 실물자산을 추가로 사용해야 하는 가계를 구분하였다. 이렇게 구분된 가계는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거주주택이외의 실물자산을 유동화하여 사용할 것을 가정하였고 금융자산을 사용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기간을 산정하고 이를 예상사망연령과 비교함으로써 다음 단계의 자산(거주주택 자산)을 사용할지를 파악하였다. 거주주택자산을 사용하는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유동화 과정을 통해 노후생활을 위해 사용할 경우 남은 은퇴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에도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해야 할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모두 사용하더라도 노후자금이 부족한 자

산고갈위험성을 보유하고 있는 가계라고 할 수 있다.

4) 생활유지가능성

생활유지가능성은 각 자산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기간이 남은 은퇴기간보다 크거나 같은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것으로 만약 계산된 기간이 남은 은퇴기간보다 길다면 현재와 같은 생활을 은퇴기간동안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남은 은퇴기간은 통계청의 2009년 기준 완전생명표를 이용하여 연령별, 성별 기대여명을 이용하였다.

각 자산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기간은 아래의 <식 4>에 의해 계산되었는데, 이는 <식 3>을 수정한 것이다.

자산사용기간(n) =

$$\text{Log}_{\left(\frac{1}{1+k}\right)} \cdot \left[1 - \frac{A_m}{C} \cdot \left(\frac{k}{1+k} \right) \right] \quad \text{<식 4>}$$

여기서, $k = \left[\left(\frac{1+f}{1+r} \right) - 1 \right] \times 100 = 1.641\%$
 $f = \text{물가상승률} = 3\%$ (최근 5년간의 물가상승률 평균)
 $r = \text{자산수익률} = 4.69\%$ (최근 5년간의 평균정기예금금리)
 $A_m = A_{m_0} (1+i)^t$: 해당 자산 사용 시점 가치
 $A_{m_0} = \text{해당자산의 현재시점가치}$
 $i = 3\%$ (최근 5년간의 지가상승률 평균)
 $t = \text{해당자산 운용기간}$
 $C = \text{연간부족생활비}$

즉, 이미 정해져 있는 자산을 금융자산과 거주주택 이외의 실물자산, 거주주택 자산으로 구분하고 해당 자산을 실제 사용하기 전까지는 일정 수준의 수익률로 증가되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동일한 구매력을 유지해야 하므로 물가상승률조정수익률을 적용하였다. 이 때, 적용한 물가상승률은 2009년 기준 최근 5년의 평균인 3%를 적용하였고, 은퇴기간동안의 자산수익률은 2009년 기준 최근 5년간의 평균정기예금금리인 4.69%를 적용하였다. 따라서 동일한 구매력 유지를 위해 적용된 물가상승률조정수익률은 1.641%이다. 또한 거주주택이외의 실물자산과 거주주택 자산의 수익률은 2009년 기준 최근 5년간의 지가상승률 평균인 3%를 적용하였고, 이를 통해 해당 자산을 사용해야하는 시점의 가치로 환산하여 적용하였다.

5) 조정가능 소비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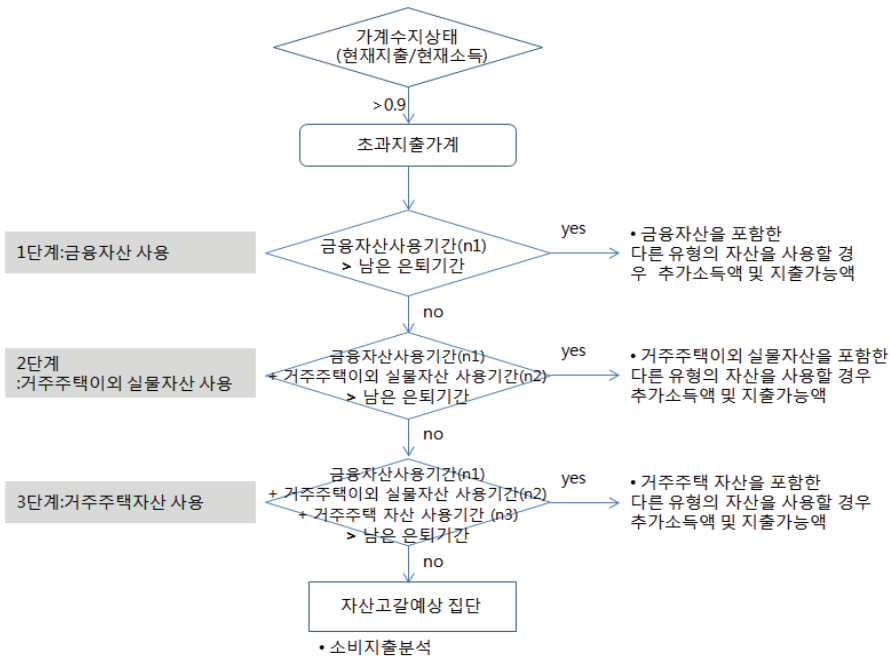
생활유지가능성 평가를 통해 해당자산으로 남은 기간의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가계는 이를 충당하고도 남은 자산을 활용하여 현재보다 높은 소비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보유자산을 남은 은퇴기간동안 모두 사용할 경우 확보할 수 있는 최대금액(최대인출금액)을 계산하였고 이 금액에서 부족한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을 추가지출가능액으로 보았다. 즉, 최대인출금액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자신의 노후생활을 위해 모두 지출하고 상속 또는 유산으로 남기는 자산은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추가지출가능액은 현재의 소비수준에서 어느 정도의 소비수준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지이며 이를 최대 조정가능 소비수준으로 정의하였다.

최대인출금액(소득액) =

$$A_m \times \frac{\frac{k}{1+k}}{1 - \left(1 - \frac{k}{1+k} \right)} \quad \text{<식 5>}$$

이상의 분석과정을 정리하면 <그림 1>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자산의 단계적 사용에 따른 생활유지가능성과 조정가능 소비수준 : 초과지출을 하는 1인 은퇴노인가계를 대상으로



〈그림 1〉 분석과정

〈표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재무적 특성

(단위 : n, %)

특성		빈도	%	특성		빈도	%
성별	남	52	11.9	혼인 상태	사별	384	88.1
	여	384	88.1		이혼/별거	40	9.7
	전체	436	100.0		미혼	10	2.3
연령	60세-64세	28	6.4	거주 지역	전체	436	100.0
	65세-69세	69	15.8		서울시	53	12.2
	70세-74세	106	24.3		광역시	143	32.8
	75세-79세	130	29.8		도	240	55.0
	80세-84세	59	13.5		전체	436	100.0
	85세 이상	44	10.1	거주주택 유형	자가	222	50.9
	전체	436	100.0		전세	71	16.3
평균연령(s.d)	75.2세(6.9세)		월세		97	22.2	
예상사망연령		88.4세(2.6세)		기타	46	10.6	
교육 수준	무학	200	45.9	거주주택 형태	전체	436	100.0
	초등학교	159	36.5		단독주택	280	64.2
	중학교	37	8.5		아파트	97	22.2
	고등학교	30	6.9		연립/다세대주택	50	11.5
	대학교입학이상	10	2.3		기타	9	2.1
	전체	436	100.0		전체	436	100.0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3>과 같다. 일반적으로 평균수명이 긴 여성이 88.1%로 11.9%의 남성보다 많았고, 75세~79세 은퇴노인이 약 30%로 가장 많았고 70세~74세까지는 24.3%, 70세 미만은 22.2%였으며 80세 이상도 23.6%에 달하였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75.2세이고 예상사망연령은 88.4세로 13.2년의 노후기간이 남아있었다. 80% 이상이 초등학교 졸업 이하였고 88%는 배우자의 사별로 인하여 1인 가구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서울 및 광역시에 거주하는 노인은 45%로 기타 시도에 거주하는 노인이 55%로 더 많았다. 또한 이들 중 절반 정도는 자가 소유하고 있었고 약 40%는 전세 또는 월세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대부분(64.2%)이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초과지출을 하는 1인 은퇴노인가계의 자산 상태

현재소득의 90%를 초과하여 지출하고 있는 1인 은퇴노인가계의 평균 가계수지지표는 6.74로 소득의 6.7배 이상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수 기준으로는 소득의 2.5배를 지출하고 있었다. 이들의 가계소득은 연평균 259만 원에 불과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매년 반복될 가능성이 낮은 주식매매차익금, 보험금 등을 제외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항목을 제외하지 않고 모두 소득에 포함하였을 경우의 평균소득은 약 487만 원이고 제외된 소득항목의 평균은 228만 원이었다. 본 연구의 목적이 이들의 현재 재무상태를 평가하기 보다는 자산을

활용하여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년 반복될 가능성이 큰 항목만을 소득으로 본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소비지출의 경우는 연간 약 619만원(월평균 약 52만원)으로 재구성된 소득에 비해 매우 높지만 이 금액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2009년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인 589만 원(월 490,845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나 법원에서 인정하는 최저생계비인 884만 원(월 736,268원,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의 150%)에는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표 4> 초과지출 1인 은퇴노인가계의 재무상태
(단위 : 천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중위수
가계소득 ¹⁾	2,589.6	2,671.2	1,908.0
가계소득(재구성전)	4,870.3	18,491.1	2,274.0
제외된 소득항목	2,280.7	18,184.1	0.0
소비지출	6,192.4	5,022.6	4,800.0
가계수지지표	6.74	14.51	2.50
연간부족생활비	3,861.7	4,535.3	2,770.8
금융자산	5,211.2	22,730.9	175.0
보유자(n=246, 56.4%)	9,236.2	29,665.9	1,125.0
거주주택이외 실물자산	5,310.1	31,516.3	0.0
보유자(n=76, 17.4%)	30,463.3	70,601.3	1,750.0
거주주택자산	33,545.9	60,129.9	10,000.0
보유자(n=300, 68.8%)	48,753.4	67,203.2	21,000.0
총자산	44,067.3	80,460.3	13,000.0
총부채	4,017.5	16,384.3	0.0
순자산	40,049.8	75,073.5	11,050.0

1)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재구성된 소득항목 기준임.

이들의 부족한 생활비는 연평균 386만 원 정도로 월평균 약 33만원이었다.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 심적회계에 따라 우선적으로 사용될 금융자산은 평균 521만 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56.4%의 평균보유액은 924만 원 정도로 나타났다. 두 번째 단계에서 사

용을 고려하게 되는 거주주택이외의 실물자산은 531만 원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유형의 자산을 실제 보유한 가계는 17.4%로 평균 3,046만 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마지막 단계에서 사용하게 되는 거주주택 자산은 3,355만 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실제 보유하고 있는 68.8%의 가계의 평균 보유액은 4,875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구성으로는 총자산의 88.2%를 실물자산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어 은퇴노인가계의 유동성이 문제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평균 402만 원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총자산에서 이를 제외한 순자산 평균보유액은 4,005만 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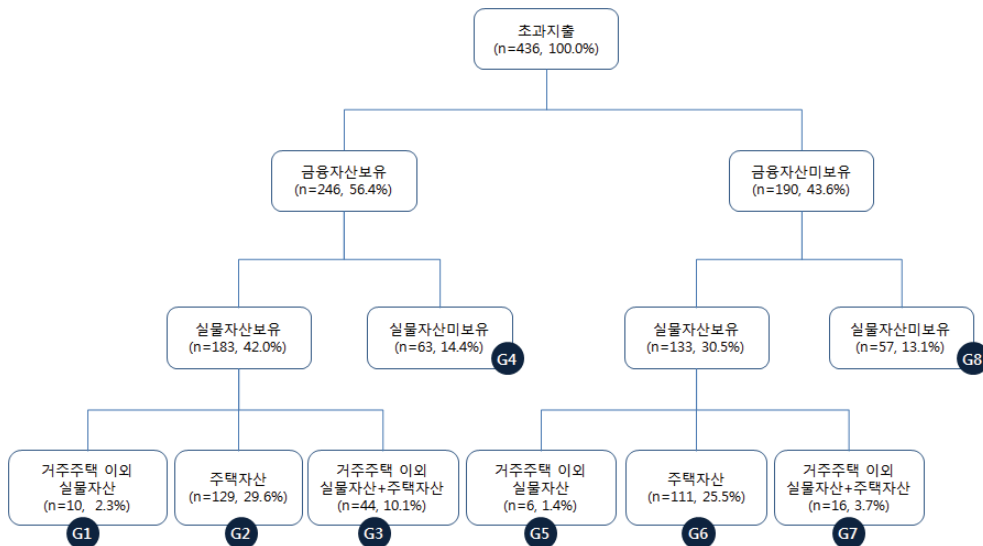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의 자산보유여부에 따라 총 8가지 유형의 집단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자산사용순서를 고려하여 <그림 2>와 같은 단계에 따른 것이며, 이를 정리하여 <표 5>로 나타내었다. 집단구분 결과 가장 많은 가계가 포함된 유형은 금융자산과 거주주택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집단 2>로 전체 가계의 약 29.6%가 포함되었다. 다음으로 많은 유형을 포함한 유형은 주택자산만

을 보유하고 있는 <집단 6>으로 전체 가계의 1/4 정도를 차지하였다. 은퇴자의 경우 남은 기간 동안 생활을 위해 유동성이 있는 자산을 일정수준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이 좋으나 이 집단의 경우는 주택자산만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는 역모기지 방법 등을 통

<표 5> 초과지출가계의 자산보유현황에 따른 집단 분류

(단위 : n, %)

구분	자산구성	n	%
G1	금융자산+거주주택 이외 실물자산	10	2.3
G2	금융자산+거주주택자산	129	29.6
G3	금융자산+거주주택 이외 실물자산+거주주택자산	44	10.1
G4	금융자산	63	14.4
G5	거주주택 이외 실물자산	6	1.4
G6	거주주택자산	111	25.5
G7	거주주택 이외 실물자산+주택자산	16	3.7
G8	자산없음	57	13.1
전체		436	100.0



<그림 2> 초과지출가계의 자산보유여부에 따른 집단 구성

해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많은 가계가 포함되는 유형은 14.4%가 포함되어 있는 <집단 4>로 금융자산만 보유하고 있는 가계인데 이들은 보유자산의 유형은 은퇴자로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충분하지 않은 금액일 가능성이 높고 이를 보완해줄 실물자산이 전혀 없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또한 네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집단 8>인데 이 집단은 소득을 제외한 어떠한 자산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집단으로 사회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첫 번째 대상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세 가지 유형의 자산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가계(집단 3)는 10.1%의 가계에 불과하였다.

2. 보유자산유형별 집단의 자산상태

보유자산의 유형별 집단에 따라 가계수지지표

와 연간부족생활비, 세 가지 유형의 자산, 총자산 및 총부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가계수지지표의 경우 금융자산과 거주주택자산을 보유한 <집단 2>에서 8.3을 나타냈고, 주택자산만 보유한 <집단 6>에서도 7.7로 높은 값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다른 집단과 차이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또한 연간부족생활비와 금융자산, 거주주택이외의 실물자산 역시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거주주택자산의 경우는 이를 보유하고 있는 4개의 집단(집단 2, 3, 6, 7)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거주주택자산 이외에 다른 실물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집단 7>의 경우 거주주택 자산이 7,374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거주주택자산을 보유한 가계에서는 3,681만 원으로 가장 낮았으며 금융자산까지 보유하는 <집단 2>와 <집단 3>은 다른 두 집단(집단 6, 집단 7)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자산의 경우 자산이 전

<표 6> 초과지출가계의 보유자산유형별 재무상태

단위 : 천원, 값 : 평균(s.d.)

	가계수지 지표	연간부족 생활비	금융자산	거주주택이외 실물자산	거주주택 자산	총자산	총부채
G1	3.0 (4.0)	1,558.2 (1,355.3)	5,015.0 (5,561.5)	27,020.0 (34,156.1)		32,035.0 _{bc} (33,163)	250.0 _b (7,756)
G2	8.3 (22.1)	4,365.6 (5,547.7)	9,013.2 (33,174.0)		54,318.1 _{ab} (73,431.9)	63,331.3 _{ab} (87,665)	2,661.2 _b (2,585)
G3	3.2 (5.4)	4,989.9 (7,100.0)	18,341.5 (36,860.4)	39,715.9 (88,374.9)	53,470.5 _{ab} (61,957.3)	111,527.8 _a (137,970)	10,022.7 _a (2,645)
G4	6.7 (10.1)	3,528.9 (3,235.7)	4,003.6 (13,007.9)			4,003.6 _c (13,008)	3,401.6 _b (2,463)
G5	5.8 (6.2)	2,133.4 (2,386.5)		3,818.3 (7,935.4)		3,818.3 _c (7,935)	0.0 _b (1,901)
G6	7.7 (12.8)	3,911.6 (3,786.0)			36,814.4 _b (56,418.8)	36,814.4 _{bc} (56,419)	1,930.9 _b (2,195)
G7	3.5 (4.9)	3,011.8 (2,160.0)		17,162.5 (32,878.2)	73,743.8 _a (87,241.9)	90,906.3 _a (93,455)	20,668.8 _a (2,029)
G8	5.7 (5.7)	2,946.1 (2,208.6)					3,605.3 _b (1,442)
F	0.903	1.587	2.134	0.726	2.302 ⁺	10.352 ^{***}	3.618 ^{***}

혀 없는 <집단 8>을 제외한 7개 집단에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세 가지 유형의 자산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집단 3>과 거주주택과 이외의 실물자산을 포함하고 있는 <집단 7>에서 가장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집단 3 1억 1,153만 원, 집단 7 9,091만 원), 주택자산 외에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집단 2>의 경우도 두 집단(집단 3과 집단 6)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반면, 주택자산은 보유하지 않고 금융자산이나 거주주택 이외의 실물자산 중 한 가지를 보유하거나 두 유형 모두를 보유한 집단들은 주택자산을 포함하여 다른 유형의 자산을 포함한 가계보다 총자산이 낮았다. 이는 거주주택자산을 우선적으로 보유한 후 다른 형태의 자산 축적을 고려하며 특히 금융자산보다는 기타실물자산을 축적

하려는 경향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총부채의 집단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총자산이 많았던 <집단 7>과 <집단 3>에서 나머지 집단들에 비해 더 많은 부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두 집단은 거주주택자산이 있으면서 기타 실물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집단이며, 거주주택자산의 가치 및 총자산이 다른 집단들에 비해 높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다른 집단들에 비해 높은 부채를 보유하는 이유를 부동산자산의 형성 목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표 7>은 보유자산유형에 따른 8개 집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각의 자산을 이용할 경우 몇 년의 생활을 대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첫 번째 집단인 금융자산과 거주주택이외의 실물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집단 1>에 속한 은

(표 7) 초과지출가계의 보유자산유형별 부족생활비 대체가능기간

값 : 평균(s.d.)

집단	n(%)	현재 연령	기대 여명	예상 사망연령	유형별 자산 이용 가능 기간 (년)		
					금융자산 (R1)	거주주택이외 실물자산(R2)	거주주택 자산(R3)
G1	10 (2.3)	72.9 (7.2)	14.9 (5.1)	87.8 (2.6)	6.5 (11.4)	47.7 (65.7)	
G2	129 (29.6)	75.1 (7.2)	13.4 (4.9)	88.5 (2.8)	4.1 (17.5)		46.2 (109.6)
G3	44 (10.1)	74.2 (5.8)	13.8 (4.7)	88.0 (1.7)	7.9 (14.8)	32.6 (78.2)	30.6 (34.3)
G4	63 (14.4)	76.0 (6.6)	12.6 (4.7)	88.6 (2.3)	3.4 (13.6)		
G5	6 (1.4)	74.2 (3.5)	13.3 (1.9)	87.5 (2.2)		35.0 (67.2)	
G6	111 (25.5)	74.5 (6.8)	13.5 (4.7)	88.1 (2.6)			30.8 (94.4)
G7	16 (3.7)	74.6 (5.8)	13.5 (4.2)	88.2 (2.0)		41.4 (131.9)	47.3 (55.5)
G8	57 (13.1)	77.2 (7.9)	12.0 (5.1)	89.2 (3.2)			
계	436 (100.0)	75.2 (6.9)	13.2 (4.8)	88.4 (2.6)	2.7 (12.2)	6.4 (39.3)	26.3 (79.8)

퇴노인의 현재평균연령은 72.9세로 평균 14.9년의 기대여명을 남겨두고 있다. 이 집단에서 부족한 생활비를 위해 금융자산을 사용할 경우 평균 6.5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거주주택이외의 실물자산을 추가로 사용할 경우 평균 47.7년을 더 생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자산과 주택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집단 2>의 경우는 남은 은퇴기간이 13.4년으로 금융자산을 이용할 경우 4.1년을, 거주주택자산을 이용할 경우 46.2년을 더 생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가지 유형의 자산을 모두 보유한 <집단 3>은 부족한 생활비를 앞으로 13.8년을 더 충당해야하는데 금융자산을 사용하는 경우 7.9년, 거주주택 이외의 실물자산을 사용하는 경우 32.6년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평균적으로는 거주주택자산을 사용하지 않아도 남은 은퇴기간을 생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주택자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30.6년을 더 생활할 수 있었다.

금융자산만을 보유하고 있는 <집단 4>는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기간이 평균 3.4년으로 나타나 결국 약 9년은 현재와 동일한 수준의 생활을 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금융자산은 없으나 거주주택이외의 실물자산만을 보유한 <집단 5>는 평균 35년의 기간을 더 생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택자산만을 보유하고 있는 <집단 6>은 30.8년을 생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주주택과 기타 부동산 등 실물자산만을 보유하고 있는 <집단 6>은 거주주택이외의 실물자산을 사용할 경우 41.4년, 거주주택자산을 사용할 경우 47.3년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 의하면, 금융자산만을 보유하고 있는 <집단 4>와 자산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집단 8>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집단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모두 사용할 경우 예상 사망 연령까지 현재소비생활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해당 집단의 평균적인 결과로써 각 가계의 현실을 반영하면 매우 다른 결과를 보이게 될 것이다. 이에 다음 절에서는 집단별로 자산의 단계적 사용에 따라 해당자산의 고갈연령과 다음 단계의 자산사용 필요여부 등을 파악하여 남은 은퇴기간 동안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가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였다.

3. 자산의 단계적 사용에 따른 생활유지가능성과 조정가능 소비수준

1) 1단계 자산 사용 : 금융자산의 사용

부족한 생활비를 대체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사용하게 된다. 이에 본 절에서는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4개의 집단(집단 1, 2, 3, 4)을 대상으로 금융자산을 이용할 경우 부족한 생활비를 몇 년 동안 대체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4개의 집단에 속하는 246가계 중 92.3%는 금융자산을 모두 사용하더라도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평균 1.4년의 기간만을 생활할 수 있었다. 특히 금융자산만을 보유하고 있는 <집단 4>는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기간이 불과 3개월에 그쳐 사실상 노후자금이 고갈된 상태로 볼 수 있으며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이 없기 때문에 사채의 이용이나 자살 등의 극단적인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나머지 <집단 1>과 <집단 2>, 그리고 <집단 3>은 금융자산 이외에 거주주택이외의 실물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자산을 모두 사용한 이후의 기간 동안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 중 <집단 3>은 거주주택까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남은 은퇴기간동안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한편, 금융자산을 사용하는 가계 중 7.7%는 부족한 생활비를 대체할 수 있는 기간이 평균 44.3년으로 나타나 남은 은퇴기간동안 현재와 동일한 수준의 생활을 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집단 1>, <집단 2>, <집단 3>

은 금융자산 이외에 거주주택이외의 실물자산이나 거주주택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상속이나 증여를 고려하거나 남은 노후생활을 위해 추가적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 이에 7.7%의 가계를 대상으로 금융자산과 다른 유형의 자산을 노후자금으

<표 8> 금융자산 이용에 따른 생활유지가능성 변화

값 : 평균(s.d.)

집단	n(%)	기대수명까지 생활 가능			기대수명까지 생활 불가능		
		n(%)	대체가능기간 (년)	고갈연령 (세)	n(%)	대체가능기간 (년)	고갈연령 (세)
G1	10 (2.3)	2 (0.5)	24.0 (19.8)	103.5 (10.6)	8 (1.8)	2.1 (1.7)	73.6 (6.8)
G2	129 (29.6)	7 (1.6)	52.3 (59.3)	133.4 (50.9)	122 (28.0)	1.4 (2.9)	76.2 (7.0)
G3	44 (10.1)	6 (1.4)	40.0 (18.0)	121.8 (23.8)	38 (8.7)	2.9 (4.2)	76.6 (5.3)
G4	63 (14.4)	4 (0.9)	47.0 (33.1)	127.0 (34.7)	59 (13.5)	0.4 (0.6)	76.2 (6.7)
계	246 (100.0)	19 (7.7)	44.3 (39.3)	125.3 (36.2)	227 (92.3)	1.4 (2.8)	76.2 (6.6)

<표 9> 금융자산 이용시 생활지속가능한 가계의 자산사용에 따른 추가소득 및 지출가능액

값 : 평균(s.d.)

	n(%)	현재소비지출	연간부족생활비	R1		R1 + R2		R1 + R2 + R3	
				①	②	①	②	①	②
G1	2 (0.5)	4,572 (407)	1,112 (1,065)	1,736 (1,463)	624 (398)	3,383 (3,743)	2,271 (2,678)		
G2	7 (1.6)	6,514 (3,044)	1,979 (1,669)	7,582 (8,725)	5,603 (7,616)			24,528 (28,831)	22,549 (27,995)
G3	6 (1.4)	7,056 (3,595)	1,909 (1,868)	6,429 (8,309)	4,520 (6,547)	8,623 (8,328)	6,715 (6,839)	15,723 (15,285)	13,814 (13,494)
G4	4 (0.9)	6,627 (5,237)	1,633 (2,540)	3,843 (3,898)	2,211 (1,588)				
계	19 (7.7)	6,505 (3,432)	1,793 (1,764)	5,815 (7,160)	4,023 (5,894)	6,682 (7,247)	4,889 (6,067)	15,167 (20,576)	13,374 (19,668)

R1 : 금융자산 R2 : 거주주택이외 실물자산 R3 : 거주주택자산

① 해당자산을 모두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연평균추가소득액(천원)

②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한 후 추가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천원)

〈표 10〉 거주주택 이외의 실물자산 추가 이용에 따른 생활유지가능성 변화

값 : 평균(s.d.)

집단	n(%)	기대수명까지 생활 가능			기대수명까지 생활 불가능		
		n(%)	대체가능기간	고갈연령	n(%)	대체가능기간	고갈연령
G1	8 (1.8)	4 (0.9)	115.0 (53.4)	191.3 (49.5)	4 (0.9)	1.0 (0.8)	72.5 (5.8)
G3	38 (8.7)	11 (2.5)	115.6 (121.3)	195.0 (122.7)	27 (6.2)	1.2 (2.2)	76.6 (5.0)
G5	6 (1.4)	2 (0.5)	104.5 (89.8)	182.5 (89.8)	4 (0.9)	0.3 (0.5)	72.5 (2.9)
G7	16 (3.7)	4 (0.9)	163.8 (245.9)	240.5 (252.4)	12 (2.8)	0.7 (1.5)	74.6 (3.8)
계	68 (100.0)	21 (30.9)	123.6 (132.9)	201.8 (135.1)	47 (69.1)	1.0 (1.8)	75.4 (4.8)

로 사용할 경우 추가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보았다(표 9). <집단 1>의 경우 금융자산을 이용할 경우 연평균 174만 원의 소득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여 소비생활의 큰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우나, 거주주택이외의 실물자산까지를 활용할 경우에는 연평균 338만 원의 추가소득이 발생하여 연간 227만 원(월평균 19만 원)의 추가지출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2>는 금융자산을 사용함으로써 연간 758만 원의 추가소득이 발생하고 560만 원(월평균 약 47만 원)의 추가지출이 가능하였으며, 거주주택까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월평균 약 188만 원의 추가지출이 가능하여 현재보다 크게 향상된 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세 가지 유형의 자산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집단 3>은 금융자산의 활용으로 월평균 38만 원의 추가지출이 가능하였고 거주주택을 포함한 모든 자산을 활용할 경우에는 월평균 115만 원의 추가지출이 가능하였다. 금융자산만을 보유하고 있는 <집단 4>의 경우는 연간 384만 원의 추가소득이 발생가능하며 따라서 월평균 34만 원의 추가지출이 가능하였다.

2) 2단계 자산 사용 : 거주주택 이외의 실물자산의 사용

2단계의 자산사용에서는 1단계에서 금융자산을 사용하더라도 남은 은퇴기간동안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227가계 중 거주주택 이외의 실물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46가계(집단 1, 집단 3)와 금융자산은 보유하지 않지만 거주주택 이외의 실물자산은 보유하고 있는 22가계(집단 5, 집단 7)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총 68가계 중 30.9%(21가계)는 거주주택 이외의 실물자산을 사용함에 따라 평균 123.6년의 기간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남은 은퇴기간동안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고도 많은 금액이 남을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남은 금액을 보다 향상된 노후생활수준을 위해 사용할 경우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의 지출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집단 1>은 연간 약 635만 원의 추가소득이 발생하여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고도 월평균 약 53만 원을 더 지출할 수 있었다(<표 11> 참고).

<집단 3>의 경우에는 거주주택 이외의 실물자산을 사용할 경우 연간 1,0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 추가발생하게 되고 이는 월평균 약 82만원

〈표 11〉 거주주택이외의 실물자산 이용시 생활유지가능한 가계의 자산사용에 따른 추가소득 및 지출가능액
 값 : 평균(s.d.)

	n(%)	현재소비 지출	연간부족 생활비	R2		R2 + R3	
				①	②	①	②
G1	4 (0.9)	10,164 (10,293)	1,079 (949)	6,345 (5,707)	5,266 (4,769)		
G3	11 (2.5)	6,860 (5,467)	3,023 (5,596)	9,793 (11,586)	6,769 (7,199)	13,138 (13,782)	10,114 (8,979)
G5	2 (0.5)	2,712 (2,410)	68 (72)	1,019 (1,371)	951 (1,299)		
G7	4 (0.9)	4,713 (3,349)	1,532 (1,336)	6,076 (3,464)	4,545 (3,994)	10,732 (3,548)	9,201 (3,879)
계	21 (30.9)	6,685 (6,132)	2,087 (4,149)	7,592 (9,036)	5,505 (5,912)	10,232 (10,865)	8,144 (7,433)

R2 : 거주주택이외의 실물자산 R3 : 거주주택자산

- ① 해당자산을 모두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연평균추가소득액(천원)
- ②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한 후 추가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천원)

의 추가지출을 할 수 있는 금액이다. 만약 이들이 거주주택자산까지 사용할 경우에는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고도 월평균 110만 원을 추가적으로 지출할 수 있게 되어 보다 풍요로운 노후생활이 가능할 것이다. <집단 5>는 거주주택이외의 실물자산만을 보유한 집단으로 이를 노후생활을 위해 사용하더라도 연간 102만원(월평균 8.5만원)의 추가소득이 발생하는 것에 그친다. 더욱이 이들의 현재소비지출은 연간 272만 원(월평균 약 23만 원)에 불과하고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파악된다. <집단 7>은 금융자산이 없기 때문에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거주주택이외의 실물자산을 사용해야하며 이럴 경우 연간 608만 원(월평균 약 51만 원)의 추가소득이 발생하고 이로써 약 455만 원(월평균 38만 원)의 추가지출이 가능해진다. 이들의 현재소비지출이 월평균 40만 원 정도임을 감안할 때 거주주택이외의 자산을 사용하더라도 월평균 100만 원을 넘지 않게 되므로 거주주택자산의 활용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이럴 경우 연간 920만 원(월평균 77만 원)의 추가지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주택 이외의 실물자산을 사용함으로써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었던 21가계를 제외한 47가계는 평균 1년 정도만 대체가 가능하여 마지막 단계의 거주주택 자산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집단 1>과 <집단 5>는 추가로 사용가능한 거주주택 자산이 없기 때문에 2단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이 고갈되어 예상 사망연령까지 남은 기간 동안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것이다. 나머지 <집단 3>과 <집단 7>은 다음 단계의 분석에 포함되었다.

3) 3단계 : 거주주택자산의 사용

거주주택자산을 사용하는 3단계에서는 금융자산을 사용하는 1단계와 거주주택 이외의 실물자산을 사용하는 2단계를 모두 고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지 못한 <집단 3>의 27가계와 금융자산은 없으나 거주주택 이

외의 실물자산이 있어 이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은퇴기간을 대체하지 못한 <집단 7>의 12가계, 그리고 거주주택 이외의 실물자산은 없으나 금융자산이 있어 고려하였으나 자산이 부족했던 <집단 2>의 122가계, 그리고 주택자산만을 보유하고 있는 집단6의 111가계 등 총 272가

계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거주주택자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자산을 처분하기 보다는 주택연금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추가소득을 획득하거나 거주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등을 고려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272가계 중 40.8%가 부족한 생활비

<표 12> 거주주택 자산의 추가 이용에 따른 생활유지가능성 변화

값 : 평균(s.d.)

집단	n(%)	기대수명까지 생활 가능			기대수명까지 생활 불가능		
		n(%)	대체가능기간	고갈연령	n(%)	대체가능기간	고갈연령
G2	122 (28.0)	49 (11.2)	90.7 (114.7)	168.6 114.3	73 (16.7)	4.0 (3.5)	79.1 (6.8)
G3	27 (6.2)	14 (3.2)	32.3 (25.7)	108.9 23.8	13 (3.0)	3.2 (1.9)	80.1 (4.7)
G6	111 (25.5)	40 (9.2)	78.2 (146.6)	153.5 145.4	71 (16.3)	4.0 (3.6)	78.2 (7.6)
G7	12 (2.8)	8 (1.8)	56.3 (52.3)	132.0 53.0	4 (0.9)	2.8 (2.2)	75.0 (2.4)
계	272 (100.08)	111 (40.8)	76.3 (118.2)	153.0 117.6	161 (59.2)	3.9 (3.4)	77.7 (7.1)

<표 13> 거주주택자산 이용시 생활지속가능한 가계의 자산사용에 따른 추가소득 및 지출가능액

값 : 평균(s.d.)

	N(%)	현재소비지출	연간부족 생활비	R3	
				①	②
G2	49 (11.2)	5,853 (3,339)	2,729 (3,033)	8,836 (6,640)	6,106 (6,004)
G3	14 (3.2)	7,338 (3,612)	4,108 (3,886)	9,157 (9,956)	5,049 (7,791)
G6	40 (9.2)	5,395 (2,434)	2,236 (2,112)	7,227 (10,477)	4,991 (8,904)
G7	8 (1.8)	6,974 (3,040)	3,190 (2,326)	9,870 (8,034)	6,680 (8,458)
계	111 (40.8)	5,956 (3,088)	2,759 (2,841)	8,371 (8,648)	5,612 (7,479)

R3 : 거주주택자산

- ① 해당자산을 모두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연평균추가소득액(천원)
- ②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한 후 추가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천원)

를 충당하여 남은 은퇴기간을 생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보유한 거주주택자산을 사용하여 평균 76년 이상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족한 생활비보다 많은 금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들 가계가 거주주택자산을 모두 노후생활을 위해 지출하는 경우 평균 837만 원(월평균 약 70만 원)의 추가소득을 획득할 수 있으며 따라서 연간 약 560만 원(월평균 약 47만 원)의 추가지출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272가계 중 절반 이상의 가계(59.2%, 161가계)는 거주주택 자산까지 모두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수명까지 생활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장수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의 단계적 사용에 따라 남은 은퇴기간동안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가계를 생활지속 은퇴노인가계로 정의하여 그 변화를 <그림 3>로 정리하였다. 총 436가계의 초과지출 가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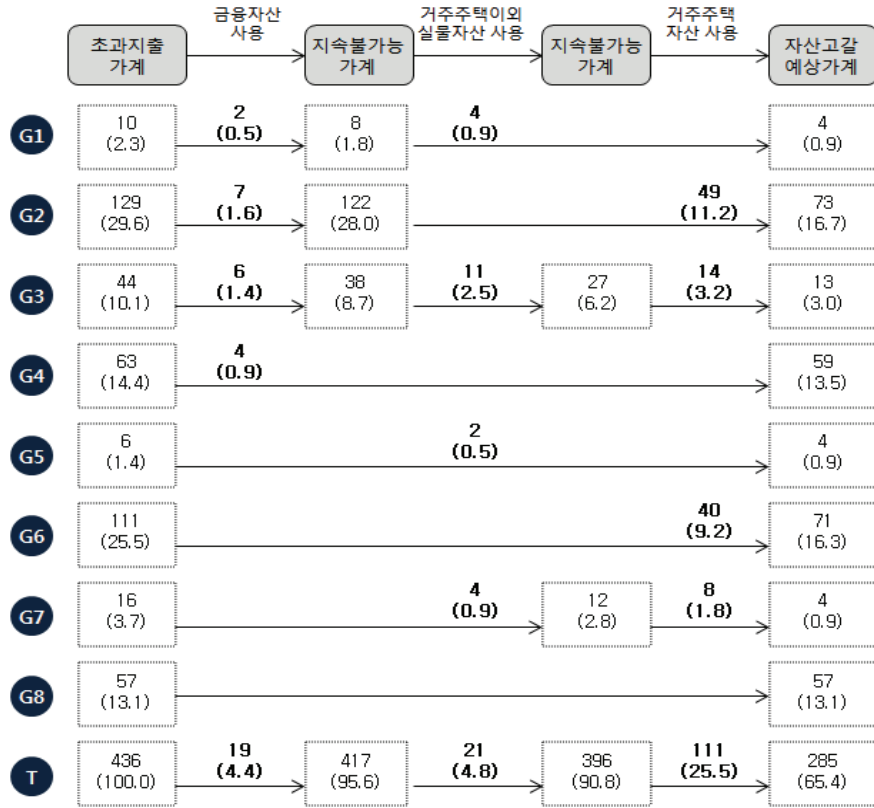
금융자산을 활용함으로써 4.4%(19가계)가 생활지속가계로 분류되었고 나머지 95.6%의 가계들 중 4.8%(21가계)는 거주주택이외의 실물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사용하여 남은 은퇴기간동안 현재와 동일한 소비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 거주주택 자산까지를 사용해야하는 396가계(전체가계의 90.8%) 중 111가계(전체가계의 25.5%)는 거주주택자산을 이용하여 생활비를 충당함으로써 남은 은퇴기간동안 자금 고갈을 경험하지 않았으나 나머지 전체가계의 65.4%에 해당하는 285가계는 여전히 남은 은퇴기간 동안 생활비 부족을 경험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전체가계의 65% 이상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을 사용하더라도 현재와 동일한 수준의 소비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고 자금고갈상태에 달하는 것이다.

반면 약 35%의 1인 은퇴노인가계는 자산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초과지출 상태였으나 자

〈표 14〉 생활유지가능한 가계의 자산사용 이전과 자산사용 이후의 수지상태 비교

값 : 평균(s.d.)

	자산사용 이전		연간부족 생활비	자산사용 이후		가계수지지표	
	가계소득	소비지출		가계소득	추가지출가능액	자산사용이전	자산사용이후
G1	8,011.2 (9,482.1)	8,300.0 (8,481.7)	1,090.0 (875.8)	13,369.1 (10,358.3)	4,268.0 (4,179.9)	1.2 (0.4)	0.6 (0.2)
G2	3,666.3 (2,861.5)	5,935.3 (3,285.1)	2,635.6 (2,897.3)	14,463.7 (13,025.4)	8,161.7 (12,127.0)	2.5 (2.4)	0.5 (0.2)
G3	4,240.1 (2,573.4)	7,113.7 (4,221.2)	3,297.6 (4,276.2)	16,080.4 (12,525.3)	8,542.7 (9,781.9)	2.0 (2.0)	0.5 (0.2)
G4	5,549.5 (6,205.7)	6,627.0 (5,236.8)	1,632.5 (2,540.4)	9,392.7 (6,352.9)	2,210.8 (1,587.9)	1.9 (1.8)	0.7 (0.2)
G5	2,938.0 (2,757.7)	2,712.0 (2,409.8)	67.8 (72.1)	3,957.3 (1,386.6)	951.5 (1,299.0)	1.0 (0.1)	0.6 (0.4)
G6	3,510.1 (2,296.4)	5,394.9 (2,434.2)	2,235.8 (2,112.3)	10,737.2 (10,262.3)	4,991.3 (8,903.5)	3.2 (6.4)	0.6 (0.2)
G7	3,980.7 (1,916.0)	6,220.0 (3,190.4)	2,637.4 (2,143.9)	14,138.5 (7,448.4)	7,520.4 (7,153.1)	3.0 (5.3)	0.5 (0.3)
전체	3,980.6 (3,259.6)	6,126.3 (3,674.6)	2,543.8 (2,953.3)	13,465.6 (11,614.1)	6,941.3 (10,077.5)	2.5 (4.0)	0.6 (0.2)



〈그림 3〉 자산의 단계적 사용에 따른 생활지속가계의 변화
값 : n(%)

산을 사용함에 따라 가계수지상태가 개선되었고 자산을 이용하여 추가소득이 발생하면서 보다 나은 노후생활을 지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14> 참고). 즉, 자산을 사용하기 이전의 가계수지지표는 평균 2.5이었으나 자산사용이후에는 평균 0.6으로 크게 개선되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초과지출을 하는 1인 은퇴노인가계를 대상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보

유하고 있는 자산을 심적계정에 따라 금융자산, 거주주택 이외의 실물자산, 거주주택 자산으로 구분하여 이를 단계적으로 활용할 경우 현재와 동일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만약 현재와 동일한 수준의 생활이 가능할 경우 해당자산을 이용하여 최대한 가능한 지출액을 산출하여 어느 정도까지 지출을 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고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과지출을 하고 있는 1인 은퇴노인가계의 재무상태를 살펴본 결과 매우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최근 한 해 동안의 연

평균소득은 487만 원에 불과하였는데 이 중 일시적으로 발생한 보험금이나 자산매매차익금 등 228만 원을 제외하면 연간 259만 원의 소득에 불과하다. 반면 연간소비지출은 619만 원으로 2009년 기준 법원인정 최저생계비(884만 원, 월 736,268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며 가계소득의 3 배 이상이 되는 수준이었고, 연간 386만 원정도의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둘째, 우리나라 1인 은퇴노인가계의 자산포트폴리오는 노후대비를 위한 균형 있는 구성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실물자산을 노후자금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분석되었다. 즉, 초과지출을 하는 1인 은퇴노인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세 가지 자산의 유형에 따라 총 8개의 집단으로 구분한 결과, 금융자산과 거주주택 이외의 실물자산, 그리고 거주주택 자산 등의 세 가지 유형을 모두 보유한 가계는 10.1%에 불과하였다. 반면 주택자산만을 보유하고 있는 은퇴노인가계는 전체 가계의 1/4 정도가 되었고 주택자산과 함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가계들은 30% 정도로 가장 많았다. 노후기간에는 비상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보유 자산으로 생활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유동자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은퇴시기가 다가올수록 자산포트폴리오 구성을 조정해야 하며, 이에 대한 금융소비자교육을 통해 실물자산에 치중된 투자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가장 주요한 내용 중 하나로, 1인은퇴노인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사용할 경우 부족한 생활비를 대체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본 결과, 금융자산은 평균 2.7년, 거주주택이외의 실물자산은 평균 6.4년, 그리고 거주주택자산은 평균 26.3년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칫 은퇴자들이 모든 자산을 활용할 경우 노후대비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으나, 실제 해당 유형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가계는 금융자산의

경우 56.4%, 거주주택이외의 실물자산의 경우 17.4%, 거주주택자산의 경우 68.8%로 다를 뿐만 아니라 보유자들 중에서도 금액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해석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실제 자산의 보유여부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고 집단별로 해당 자산의 사용에 따른 대체기간을 분리하여 살펴보았으며, 이것이 본 연구의 차별점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 노인복지를 위한 정부의 소득지원 정책에서 특별히 핵심 계층을 선정하여 그들을 위한 차별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실물자산의 활용을 위한 정부주도의 제도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자산사용의 순서를 단계적으로 적용한 결과에 따르면, 첫 번째 단계에서 금융자산을 활용함으로써 남은 은퇴기간동안 부족한 생활비를 모두 충당할 수 있는 은퇴노인가계는 19가계로 전체의 4.4%에 불과하였다. 또한 거주주택 이외의 실물자산을 추가로 사용할 경우에도 21가계(전체의 4.8%)만이 부족한 생활비를 모두 충당할 수 있어 거주주택자산을 제외한 자산으로 총 9.2%의 가계가 현재와 동일한 수준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단계에서 거주주택자산을 활용할 경우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여 남은 은퇴기간동안 동일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가계는 전체 가계의 25.5%로 나타나 35% 정도의 가계가 자산사용을 통해 현재와 같은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활비 부족을 경험하는 노인들을 위해 소득보장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 등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이 보유한 자산을 활용함으로써 책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정보가 된다. 다만, 이러한 책임 감소의 효과를 위해서는 은퇴노인가계가 자산을 현금화하여 사용함에 있어 자산가치의 손실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 민간금융기관에서 시행했던 역모기지는 실패하였으나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

과 노력으로 종신보장이 가능한 주택연금상품이 개발되었고 최근에는 농지연금 상품까지 나오면서 은퇴자들이 부동산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이들의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공공적인 측면에서 자산관리서비스를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다섯째, 자산사용을 통해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한 가계들은 대부분 잉여자산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상속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겠으나 현재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 자신이 지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초과지출 은퇴노인가계의 소비지출이 1인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스스로 최대의 효용을 누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자산사용을 통해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었던 151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모두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월평균 약 11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현재의 생활비보다 월평균 58만 원 정도를 추가로 지출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집단별로는 세 가지 유형의 자산을 모두 보유한 가계가 가장 많은 추가소득이 발생하여 월평균 134만 원의 소득을 획득할 수 있었다. 반면 한 가지 유형만을 보유한 가계 중 거주주택이외의 실물자산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소득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생계비보다 부족하였다.

여섯째, 모든 자산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65.4%는 소득향상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은퇴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자금 고갈을 막기 위해서는 은퇴기간동안의 생활수준을 현재보다 낮추거나 자금을 모두 소진한 이후의 생활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 가계의 소비지출수준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의 소득보장에 대한 핵심대상 계층으로 분류되어 적절한 관리를

받아야 할 것이다. 즉, 일차적으로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겠으나 건강상 허락되지 못할 수도 있고 우울증 등의 심리적 문제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삼성경제연구소(2011)에서 제시하였던 것처럼 정신건강사업과 건강검진사업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은퇴자의 자산을 심적계정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면서 생활유지가능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실물자산을 현금화하여야 하는 시점을 제시하였다는 차별성을 갖는다. 이는 은퇴자의 자산운용을 목적으로 한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데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은퇴자들이 최대효용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산정하였다는 점에도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채를 제외하지 않은 자산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갖는다. 만약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을 적용하면 현재보다 좋지 않은 결과가 예상되지만 대부분의 부채가 주택관련 자산인 경우에는 현재와 유사한 결과일 것이다. 또한 지출이 지나치게 적어 초과지출 가계로 선정되지 않은 은퇴자가계가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최저생계비를 분석대상자의 추출 기준으로 적용하거나 그러한 가계만을 대상으로 하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은퇴기간동안 자산수익률로 적용한 수익률(4.69%)은 과거 평균수익률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속되는 저금리 사태에 비추어 볼 때 높은 가정치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참 고 문 헌】

- 1) 김민정(2009). 은퇴자가계의 금융자산인출전략.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 김민정(2010). 은퇴자가계의 지출수준과 노후

- 자금 고갈가능성에 관한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3(1), 77-108.
- 3) 김영순(2004). 노인가계의 지출적정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283-292.
 - 4) 김혜련(1999). 유형별 가계소득과 자산이 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주거형태별 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5) 김혜정·여윤경(2011). 개인의 은퇴자산 부족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분석적 연구. *금융연구*, 25(2), 83-115.
 - 6) 유우정·배미경(2006). 재정비율을 이용한 노인가계의 재정상태 평가. *대한가정학회지*, 45(4), 17-28.
 - 7) 백은영(2008). 은퇴 후 소득적정성 및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보장연구*, 24(2), 57-51.
 - 8) 삼성경제연구소(2011). 고령화 시대의 노인 1인 가구-소득변화의 특징과 시사점. *SERI 경제포커스*, 357호, 1-11.
 - 9) 성영애(2010). 노인단독가구의 실제 생계비와 주관적 생계비간의 차이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6), 192-205.
 - 10) 송유진(2007). 사별 후 혼자 사는 노인1인 가구의 특성 - 지역별 분포와 사회경제적 특성,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8(1), 147-160.
 - 11) 이선형·이연숙(1997). 노인 단독가구의 가계 재정 관리와 경제생활만족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 31-43.
 - 12) 정운영·정세은(2010). 저소득노인가계와 고소득 노인가계의 소비지출구조 및 결정요인의 비교. *사회보장연구*, 26(4), 1-28.
 - 13) 양성강(2009). 심적회계를 통한 가계 소비지출행태에 대한 고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4) 양정선·성영애(2001). 노인가계의 경제구조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1), 173-190.
 - 15) 여윤경·정순희·문숙재(2007). 한국 가계의 은퇴준비에 관한 연구 : 중산층 가계의 주관적 은퇴준비 충분성을 중심으로. *소비문화연구*, 10(3), 129-154.
 - 16) 여윤경(2005). 한국중산층가계의 노후자금 적정성. *한국노년학*, 25(1), 21-36.
 - 17) 이지영·최현자(2008). 우리나라 은퇴자의 은퇴자금 충분성과 영향요인 : 객관적 충분성과 주관적 인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9(1), 215-230.
 - 18) 이희숙(1995). 일하는 기간동안의 가계저축행태와 은퇴 후 가계소비행태와의 연계성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6(1), 41-56.
 - 19) 이희숙·신상미(2003). 은퇴노인가계의 경제구조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4), 103-116.
 - 20) 정순희·김현정(2002). 소득, 지출 및 자산 충분성 분석을 통한 취업노인가계와 비취업노인가계의 재정상태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2), 113-122.
 - 21) 최현자·김민정(2010). 은퇴자조사 자료를 활용한 은퇴생활분석-은퇴설계에의 제언. 2010년 대한가정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53-70.
 - 22) 주소현(2009). 재무설계를 위한 행동재무학. 서울 : 한국FP협회.
 - 23) 최현자·주소현·김민정·김정현(2009). 한국의 은퇴준비지수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20(3), 189-214.
 - 24) 최현자·김민정·주소현·조혜진(2012). 금융위기 전후 도시근로자가계의 은퇴준비도 변화 : 2006년과 2009년의 비교. *소비자정책교육연구*, 6(1), 45-71.
 - 25) 한수진·서지수(2008). 노인가계 유형별 경제구조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2), 83-101.
 - 26) Bengen, W. P. (1994). *Determining withdrawal*

- rates using historical data. *Journal of Financial Planning*, 7(1), 171-180.
- 27) Cooley, P. L., Hubbard, C. M. & Walz, D. T. (1998). Retirement spending : choosing a sustainable withdrawal rate. *Journal of the American Association of Individual Investors*, 20(2), 16-21.
- 28) Cooley, P. L., Hubbard, C. M. & Walz, D. T. (1999). Sustainable withdrawal rates from your retirement portfolio. *Journal of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10, 39-47.
- 29) Guyton, W. T. (2004). Decision rules and portfolio management for retirees : is the 'safe' initial withdrawal rate too safe?, *Journal of Financial Planning*, 17(10), 54-62.
- 30) Jonh H.(2005), Four key issues to guide future research in retirement planning, *Journal of personal finance*, 4(4).
- 31) Milevsky, M. A. (2001). Spending your retirement in Monte Carlo. *Journal of Retirement Planning*, 4, 21-29.
- 32) Pye, G. B. (2000). Sustainable investment withdrawals; the focus is on sustainability, *Journal of Portfolio Management*, Summer, 73-83.
- 33) Pye, G. B. (2001). Adjusting withdrawal rates for taxes and expenses. *Journal of Financial Planning*, 14(4), 126-136.
- 34) Shefrin, H. M. & Thaler, R. H.(1988), The behavioral life-cycle hypothesis, *Journal Economic Inquiry*, 26(4), 609-643.
- 35) Spitzer, J. J., Strieter, J. C. & Singh S. (2007). Guidelines for withdrawal rate and portfolio safety during retirement. *Journal of Financial Planning*, 20(10), 52-59.
- 36) Spitzer, J. J. (2008). Retirement withdrawals : an analysis of the benefits of periodic "midcourse" adjustment. *Financial Services Review*, 21. 17-29.
- 37) Stout, R. G. & Mitchell, J. B. (2006). Dynamic retirement withdrawal planning. *Financial Services Review*, 15, 117-131.
- 38) Stout, R. G.(2008). Stochastic optimization of retirement portfolio asset allocations and withdrawals. *Financial Services Review*, 17. 1-16.
- 39)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www.kosis.kr.

- 투 고 일 : 2012년 10월 1일
- 심 사 일 : 2012년 10월 12일
- 심사완료일 : 2012년 11월 8일